

배포 일시	2022. 11. 29.( 화)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사무관 유찬호 (044-201-399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9일 17시 기준 상황

### □ 집단운송거부 동향

- 오늘 약 7,00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하였으며,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
- 오늘 16:41경 울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량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노조원 250여명이 도로에 나와 차량 앞을 막으며 운송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가 진행
- 또한 10:45경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차량 전면 유리창에 라이트를 던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 □ 물류 및 산업 동향

- (항만) 오늘 17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7%으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 차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 컨테이너 장치율 및 반출입량 추이 >

구분	평시 (22.10)	11.24. 17시	11.25. 17시	11.26. 17시	11.27. 17시	11.28. 17시	11.29. 17시
장치율 (평시대비 %)	64.5	64.2	63.9	63.7	62.4	62.4	62.8
컨테이너 반출입량 (TEU, 평시대비 %)	36,655	14,695 (40%)	10,451 (28%)	6,929 (19%)	2,788 (8%)	11,928 (33%)	13,630 (37%)

-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

<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추이, 단위: TEU >

구분	평시 (22.10)	11.24. 17시	11.25. 17시	11.26. 17시	11.27. 17시	11.28. 17시	11.29. 17시
부산항	20,392	9,956	8,406	5,863	2,542	8,841	10,442
광양항	4,625	22	38	0	0	106	15
평택·당진항	1,606	43	34	43	0	273	308
울산항	1,128	8	2	0	0	16	80

- (건설) 오늘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 시,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
- (시멘트)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11% 가량(2.1만t)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
- (레미콘)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8%(4.5만m<sup>3</sup>) 생산된 것으로 파악

## □ 주요 대응상황

-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공고함
- 아울러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함
-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
-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며,

- 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화물연대 면담(세종, 11.30.(수) 14:00)

##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9. 17: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금일 10시17시 반입 (C)	금일 10시17시 반출 (D)	금일 10시17시 반출입 (C+D)	전일 10시17시 반출입 (E)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10)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591,442	587,173	62.8	62.4	64.5	7,371	6,259	13,630	11,928	19,448	17,207	36,655
부산항	592,335	392,872	390,288	66.3	65.9	68	5,539	4,903	10,442	8,841	10,984	9,408	20,392
인천항	112,921	84,614	83,478	74.9	73.9	76.3	1,532	1,064	2,596	2,448	4,339	3,787	8,126
광양항	110,856	68,486	68,153	61.8	61.5	61.4	3	12	15	106	2,260	2,365	4,625
평택·당진항	39,281	19,199	18,676	48.9	47.5	59.3	172	136	308	273	860	746	1,606
울산항	29,464	14,172	14,416	48.1	48.9	55	38	42	80	16	614	514	1,128
군산항	8,006	1,187	1,182	14.8	14.8	13.3	15	13	28	66	80	78	158
마산항	3,700	207	201	5.6	5.4	5	6	0	6	6	44	29	73
대산항	8,255	2,066	2,066	25.1	25.1	26	0	0	0	0	87	82	169
포항항	24,041	7,140	7,221	29.7	30.0	26	20	20	40	36	38	57	95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0	0	0	0	25	25	50
목포항	8,022	479	479	6	6	5	41	67	108	125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70	663	20.6	20.3	22	5	2	7	11	10	11	21

## 붙임 2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 통행료 면제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지자체 민자도로 제외)
-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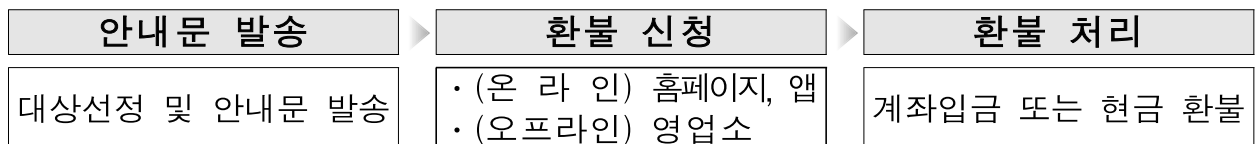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중앙수송대책본부 044-201-4802~03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